

제 528 호

1975.9.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586 호 : 서울특별시도토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 ..... 3

◎ 규 칙

제 1518 호 :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 4

제 1519 호 : 서울특별시소방서직제중개정규칙..... 9

제 1520 호 : 서울특별시농가대여 양곡전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10

◎ 공 고

제 225 호 : 주택개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공람공고 .....16

◎ 정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9월 30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986 호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3 호 및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 호를 삭제한다.

- 3.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부과당  
시 토지의 시가가 공사시행 공  
고당시 토지시가에 자연 상승치  
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4. 삭 계

- 5. 토지의 자연상승치라 함은 공  
사시행 공고일로부터 부과시의

토지가액조사완료 기간까지의 일반  
도매불가 상승율을 말한다.

제 10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부담금 부과를 위한 토지가액조사  
및 부과는 공사준공일 이후 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준  
공된 공사로서 부과시의 토지가액조사  
및 부과를 하지 아니한 공사는 이  
조례 시행일을 준공일로 본다.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중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9월 30일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제 1518 호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 조 제 7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오납금의 환부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과오납금 (이자불 포함) 의 환  
부는 구청장이 환부결정을 한  
후에 환부하는 년도의 시세수입  
금 중에서 이를 환부하여야 한  
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할  
시세입금 수납액중 출납폐쇄기한  
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과오  
납된 년도의 시세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제 29 조 제 2 항중 "국세징수법 제 32  
조 2 윌" "국세징수법 제 16 조"로  
한다.

제 34 조상 "5 일"을 "7 일"로 한다

제 50 조중 "국세징수법 제 48 조"를  
"국세징수법 제 34 조"로 한다.

제 52 조 제 1 항 본단중 "국세징수법  
제 55 조, 제 59 조, 제 61 조, 제 6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9 조"를 "국세징  
수법 제 41 조, 제 45 조, 제 48 조,  
제 5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 조"  
로 하고, 동조 동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징수법 제 41 조에 의한 압류  
통지는 별지제 23 호서식
2. 국세징수법 제 45 조에 의한 압류  
통지는 별지제 24 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 48 조에 의한 압류  
통지는 별지제 24 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 51 조에 의한 압류  
통지는 별지제 25 호서식
5. 국세징수법시행령 제 39 조에 의  
한 압류통지는 별지제 26 호서식

제 53 조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62  
조"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 41 조"  
로 한다.

제 65 조 표제 "귀속재산의 압류"를  
"국·공유재산의 압류"로 하고,

<p>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1)국세징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에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제37호서식의 지방세 제납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말소) 등록 촉탁서로서 관할관계 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p> <p>제69조중 「국세징수법제69조의2」를 「국세징수법제57조」로 한다.</p> <p>제72조중 「국세징수법제72조」를 「국세징수법제62조」로 한다.</p> <p>제78조중 「국세징수법제81조제1항」을 「국세징수법제73조제1항」으로 한다.</p> <p>제79조중 「국세징수법제81조제2항」을 「국세징수법제73조제2항」으로 한다.</p> <p>제89조 제1항중 「국세징수법제55조」를 「국세징수법제41조」로 한다.</p> <p>제90조 본문중 「국세징수법제92조」를 「국세징수법제31조」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세징수법제61조」를 「국세징수법제48조」로 한다.</p> <p>제92조중 「국세징수법제94조」를 「국세징수법제83조」로 한다.</p>	<p>제96조 제1항제1호중 「경방 또는 지산」을 「경방과 재산」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납된 시세가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9조 본문중 「96,000원」을 「240,000원」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96,000원」을 「240,000」으로 한다.</p> <p>제106조 제3항제3호중 「자동차의 등록상황」을 「다음에」 및 「운수업체의 사실상의 소유자이동상황」을 추가한다.</p> <p>제10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가옥의 제과세처리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세소관과는 가옥대장관리소관과로부터 가옥이전 또는 변경신고사항을 통보받아 제105조 및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li> <li>2. 과세소관과는 준공경사소관과로부터 가옥신축(계축, 증축)의 신고사항, 준공경사필증사본과 축면</li> </ol>
---	---

<p>및 평면도의 자료들 통보받아 제 105 조 및 제 10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9 조 제 1 항을 「규칙 제 53 조」 를 「규칙 제 52 조」로 한다. 제 124 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 한다. (4) 각 유흥업소에 별지 제 78 호의 2 서 식에 의한 종별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 126 조 제 2 호 중 「100 원」을 「250 원」으로 한다. 제 133 조 제 1 항을 「월 3 회 이상」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3 회」로 한다. 제 146 조를 삭제 한다. 제 154 조를 삭제 한다. 별지 제 15 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 40 조 제 5 항」을 「국세징수법 제 26 조 제 5 항」으로 한다. 별지 제 16 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 43 조」를 「국세징수법 제 29 조」로 한다. 별지 제 21 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 18 조」를 「국세징수법 제 34 조」로 한다.</p>	<p>별지 제 23 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 55 조」를 「국세징수법 제 41 조」로 한다. 별지 제 24 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 59 조 제 61 조 제 4 항 제 1 항」을 「 」국세징수법 제 45 조 제 4 항 제 46 조 제 3 항 또는 제 48 조 제 1 항으로 하고 「국세징수법 제 6 조」를 「지방세법 제 31 조 제 3 항」으로 하 여. 참고관 중 「법 제 59 조 제 4 항」을 「법 제 46 조 제 3 항」으로 한다. 별지 제 25 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 64 조」를 「국세징수법 제 51 조」로 한다. 별지 제 26 호서식(갑) 중 「국세징수법시 행령 제 59 조」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 39 조」로 한다. 별지 제 26 호서식(을) 중 「국세징수법시 행령 제 59 조」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 39 조」로 한다. 별지 제 29 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 52 조 제 2 제 2 항」을 「국세징수법 제 46 조 제 2 항」으로 한다. 별지 제 35 호서식 중 「국세징수법 제 62 조」를 「국세징수법 제 49 조」로 「동 법시행령 제 74 조 제 1 항」을 「동법시 행령 제 54 조」로 각각 한다. 별지 제 36 호서식 (등록관청)란 중 「국</p>
---	---

세정수법제 64 조제 2항 "을 "국세징수법 제 51 조제 2항 "으로 한다.

별지제 37 호서식 제목중 "귀속재산" 을 "국. 공유재산"으로 하고, 동부원인과 그 일자란중 "국세징수법제 65 조제 1항 "을 "국세징수법 제 52 조제 1항"으로 하고, 관제 관서란중 "국세징수법시행령제 71 조 (74 조) " 를 "국세징수법시행령제 48 조 (54조) " 로 한다.

별지제 38 호서식중 "국세징수법시행령제 77 조"를 "국세징수법시행령제 59 조"로 한다.

별지제 39 호서식중 "국세징수법제 67 조의 제 1항"을 "국세징수법제 54 조제 1항"으로 한다.

별지제 41 호서식중 "국세징수법제 69 조"를 "국세징수법제 56 조"로 한다.

별지제 43 호서식중 "국세징수법제 76 조"를 "국세징수법제 68 조"로 하고, 국세징수법제 83 조"를 "국세징수법제 71 조"로 한다.

별지제 46 호서식중 "국세징수법제 80 조제 3항"을 "국세징수법제 65 조제 3항"으로 하고, "국세징수법제 80 조제 4항"을 "국세징수법제 65 조제 4항"으로 한다.

별지제 55 호서식중 "국세징수법시행령제 91 조"를 "국세징수법시행령제 77 조"로 한다.

별지제 57 호서식중 "국세징수법시행령제 92 조"를 "국세징수법시행령제 78 조"로 한다.

별지제 58 호서식중 "국세징수법제 94 조"를 "국세징수법제 83 조"로 한다.

별지제 78 호의 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 89 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제 97 호서식(월 승 참고 2 중 "2.5 배"를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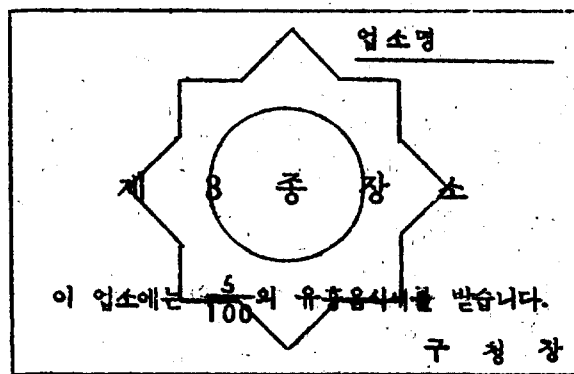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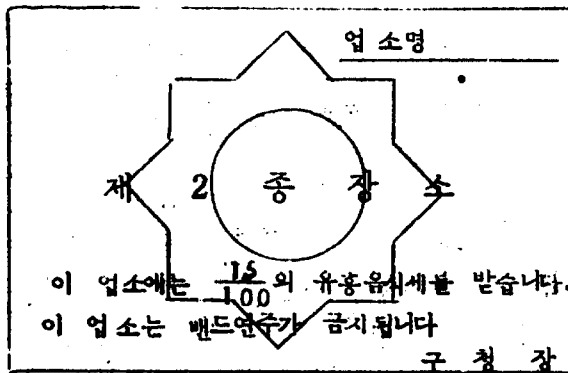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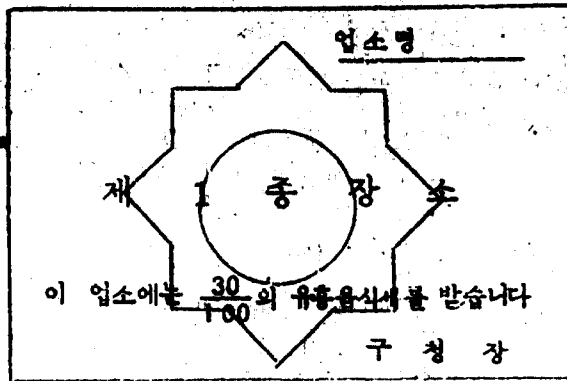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법률제 2743 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별지제 78 호의 2 서식>

법 제

- 1. 규격 : 가로 30cm X 세로 20cm
- 2. 색별 : 제1종장소 황 색  
제2종장소 청 색  
제3종장소 분 홍



서울특별시 소방서지 제증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9월 30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19 호

서울특별시 소방서지 제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소방서지제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별표 2) "소방관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의 "성동소방서"  
중 "천호소방관파출소" 및 "영동소방관  
파출소"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

고 "영동소방관파출소"란 다음에  
"잠실소방관파출소"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동 "영동포소방서"  
란중 "영동포소방관파출소" 및 "시흥  
소방관파출소"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오류소방관파출소"란  
다음에 "신림소방관파출소"란을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소방관파출소의 명칭위치와관할구역

서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성 동 소 방 서	천 호 소방관 파출소	강남구 성내동 320-1	강남구중 하일동 . 고덕동 . 암사동 . 천호동 . 봉납동 명일동 . 상일동 . 길 동 . 성내동 . 둔촌동 이 동 . 반이동 . 오금동 . 마천동 . 거여동
	영 동 소방관 파출소	강남구영동제 2지구 905 구획 1호	강남구중 입구정동 . 학동 . 신사동 . 논현동 . 잠원동 반포동 . 서초동 . 역삼동 . 우인동 . 양재동 신원동 . 원지동 . 철달동 . 도곡동 . 포이 북 영곡동



서별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잠 실 소방관 파출소	강남구잠실지구중 4 부력	강남구중 신천동·잠실동·송파동·석촌동·삼전동 가락동·문정동·잠지동·수시동·자곡동 울현동·세곡동·일원동·개포동·내곡동 삼성동·대치동
영 등 포 소방관 파출소	영등포구영등포동 4 가.101	영등포구중 영등포동 1,2,3,4,5,6,7,8 가 문래동 1,2,3,4,5,6 가·도림 1,2 동·신길 1,2,3,4 동·여의도동·대방 1,2 동·당산동 1,2 가
시 흥 소방관 파출소	영등포구독산동 170-1	영등포구중 시흥 1, 2 동·독산동 (공단팔할제의한 지역)
신 립 소방관 파출소	관악구신림지구 230 부력!	관악구중 봉천 1, 2 동·신림 1, 2, 3 동·신대방동
서울특별시 농가대여양곡전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9월 30일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및 서울특별시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농가대여양곡의 관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규칙제 1520 호 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전용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3조(대여실적보고) 구청장은 (출장소장 포함) 농가대여 양곡을 대여하였을 경우에는 대여한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월 1회(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대장비치) 대여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출장소장 포함)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여 및 회수액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차용증서 정취) 법 제3조에 의하여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차용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차용인이 보관하고 1부는 구청에(출장소장 포함) 비치 보관한다.

제6조(회수량 조정) 대여 양곡의 회수량은 원리곡을 포함한 곡종별로 9월말까지 조정하여 10월말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12월31일

을 남기로 한다.

제7조(회수종격) 원리곡을 양곡으로 회수할시의 양곡은 농산물 검사법이 정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회수 실적보고) 구청장은 (출장소장 포함) 회수 실적을 원리곡별로 집계하여 월 1회(익월 5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입) 농가대여 양곡증 양곡관리기금에 대금의 상환이 완료될 것은 세입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남부고지서) 조례 부칙 제3항에 의한 남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농가대여 양곡관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대어양곡차용계약조항

본인 등은 정부 양곡 관리물 차용함에 있어서 다음 계약조항을 분명없이 이행하여 완납할 것을 약속하며 이 증서를 제출합니다.

- 1. 차용인은 대어양곡의 대어취지 를 준수하겠습니다.
- 2. 차용인은 완납양곡(원곡 및 이곡)을 원물로 상환기간에 지정된 장소에 여김없이 상환 하겠습니다.
- 3. 보증인은 이 계약 이행에 준

하여 상호 연대 책임을 지고 만약 차용인이 소정기간에 원물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인 등 변상하겠습니다.

- 4. 상환 기간에 원곡·외곡을 완납 하지 못한 수량에 대하여 상환기간 초과할수록 따라 이곡을 가산 (초과일시 6월미만일 때는 6분 6월을 초과하였을 때는 1할) 하여 완납하겠습니다.
- 5. 이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하한 조치가 있어라도 본인들은 타동의 이의가 없습니다.

<별지 제 4 호 서식>

남부고지서 일반회계 세입고지서에 의함.

<별지 제 5 호 서식>

대여양목회수실적보고

(단위 : (가마) (키보))

구분 동별	원목회수량		회 수량		미회수량		회수실적등급별					비고
	목종별	수량	목종별	수량	목종별	수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의	계	

대여양목 이목회수 실적보고

구분 동별	이목목표량		이목회수량		미회수량		회수실적등급별					비고
	목종별	수량	목종별	수량	목종별	수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의	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25호

(주택개발을 위한 관리  
치분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45 (74.5.13) 호 제 18호 (75.2.8) 및 제 136호 (75.8.25)로 사업실시인가된 아현 2 일부지역 육인, 단목 1, 2, 거여 1, 2, 대방구역 (7개지구)의 관리치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 86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관계도서는 주택국 개량 2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3. 본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봉지일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아현지구의 기타지구는 본 공고일로부터 7일 경과후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1975. 9.25

서울특별시장

정 정

시보 제 517호 (1975. 9. 3)에 게재된 조례 제 974호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소 설치 조례중 제정 조례)중 아현와 같이 달자가 있으므로 이에 삼입 정정한다.

1975. 9.30

서울특별시장

대 지	오 류 사 랑	삼 입 사 랑
4~라단 3월	3과 도로공사 2과 광과 공사 3과	3과 물과 공사 2과 도로 공사 2 과 광과 공사 3과

성 정

시보제 521호 (75.9.19)에 게재된 규칙제 1510호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중 아현와 같이 오식이 있으므로 이에 정정한다.

1975. 9.30

서울특별시장

대 지	오 류 사 랑	성 정 사 랑
4	서울특별시규칙 1501호	서울특별시규칙 1501호